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2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6.

발 의 자 : 천준호 · 김기표 · 박상혁
김한규 · 문진석 · 허 영
박균택 · 윤후덕 · 이주희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악랄해지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 등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며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는 추세임. 이러한 불법사금융 범죄 생태계를 근절하고,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할 수 있는 신분비 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수사 특례 조항이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및 수사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금융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불법사금융 범죄등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공개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사금융 범죄등의 피

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의3(불법사금융 범죄등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불법사금융 범죄등”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8호·제10호의 죄는 제외한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등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계좌의 개설·이용 및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광고. 이 경우 그 등록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불법사금융 범죄등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12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
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
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
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
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
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
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제12조의5(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
찰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하여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2조의6(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12조의4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7(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불법사금융 범죄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불법사금융 범죄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의8(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8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장 신분의 생성·유지·사용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수사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사람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해당 수사에 사용되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관리·보존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분비공개수

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라 협조한 자는 그 협조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20조 본문 중 “제19조”를 “제19조(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10(불법사금융 범죄등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 관리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공개 또는 유통되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 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 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 는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 설>

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불법사금융 범죄 등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의3(불법사금융 범죄등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불법사금융 범죄등”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

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8호·제10호의 죄는 제외한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등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계좌의 개설·이용 및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신 설>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광고. 이 경우 그 등록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불법사금융 범죄등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
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
·대상·범위·기간·장소·방
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
12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
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
·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
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
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신 설>

제12조의5(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하여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

<신 설>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
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
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
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
는 제12조의4제1항 후단을 준
용한다.

제12조의6(불법사금융 범죄 등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제2
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12조
의4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
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
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
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신 설>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7(불법사금융 범죄 등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불법사금융 범죄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불법사금

<신 설>

<신 설>

용 범죄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
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
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의8(국회의 통제) 수사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8까지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
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
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
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신 설>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
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
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
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
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
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
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
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
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

<신 설>

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
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
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2조의3
부터 제12조의6까지에 따른 신
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장 신분의 생성·유지·사
용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수사에 참여하거나 협
조한 사람 및 그 밖의 관계인
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사항

	<u>4. 해당 수사에 사용되는 문서</u> <u>· 도화 · 전자기록 등의 관리</u> <u>· 보존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u> <u>· 보안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u> <u>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분</u> <u>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u> <u>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u> <u>받은 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u> <u>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u>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u> <u>따라 협조한 자는 그 협조행위</u> <u>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u> <u>인한 것이 아니면 그 협조행위</u> <u>와 관련하여 민사상 · 형사상</u> <u>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u> <u>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9조(벌칙) ① · ② (생략)	제1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③ ----- -----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
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
설한 사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양벌규정) -----

-- 제19조(제3항 제3호는 제외한다)-----
다)-----

[illegible]